종 합 감 사 결 과

(기관명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)

2017. 9. 21.

고 용 노 동 부
감 사 관 실

Ⅰ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대상기관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

2. 감사범위: ’14. 11. 22.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○ 기 간: ’17. 6. 12. ~ 6. 16.(5일간)

※ 직전 종합감사: ’14. 11. 17. ~ 11. 21.(5일간)

○ 인 원: 감사담당관 외 6명

4. 감사중점사항

［공통사항］

○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

○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

［고용센터］

○ 예산집행, 물품관리, 체납처분

○ 개인정보 보호, 각종 신고서 등 처리 업무

○ 각종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 업무 등

［근로개선지도］

○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업무

○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처리, 인·허가 등 승인 업무 등

［산재예방지도］

○ 중대재해 조사, 사업장 지도・감독 업무 등

Ⅱ. 감사대상 현황

○ **(행정대상)** 안산지청 관할은 2개시(안산시, 시흥시)이며, 행정대상은 **사업장 48,845개소, 근로자 수는 424,966명**임

○ **(지역특성)** 관내 산업은 **제조업**(32.0%), 도·소매업(19.9%) **비중이 높음**

- 특히 제조업(32.0%)은 전국 평균(14.2%)에 비해 매우 높고, 숙박·음식업(15.2%)과 건설업(4.0%)의 비중이 전국 평균(음식·숙박업 18.6%, 건설업 5.0%)보다 낮은 수준임

○ **(고용동향)** '16.10월 기준 안산지청 관내 **고용률**(안산시 63.2%, 시흥시 64.2%)은 **전국 평균(66.5%)보다 낮은 수준임**

- **실업률**(안산시 3.8%, 시흥시 3.2%)은 전국평균(3.4%)보다 0.4%p 높거나 0.2%p 낮음

- **취업자 수**는 **551.9천명**으로 '14년 이후 **꾸준히 증가 추세**

※ **(취업자수)** '14.10월 530.3천명 -> '15.10월 540.2천명 -> '16.10월 551.9천명

○ **(노사관계)** 관내 **노동조합은 208개소, 21,344명으로 4.3%의 낮은 조직률**(전국 10.2%, '15년)을 보임

-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113개소(13,591명), 민주노총 38개소(4,318명), 미가입 57개소(3,435명)로 구성

- 임단협 관련하여 노사간 갈등도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할 전망

○ **(직원현황)** 정원 125명 중 현원은 126명으로 **1명 초과(충원율 100.8%)**

Ⅲ. 감사결과

1. 총 평

○ **고용센터**

취업지원 업무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,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은 다소 미흡

○ **근로개선지도 업무**

신고사건 처리, 사업장 감독,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처리 및 인·허가 승인 업무 등이 미흡

○ **산재예방지도 업무**

중대재해 조사 업무는 대체로 양호하나, 시정결과 지연보고 조치, 작업중지명령 해제,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은 다소 미흡

2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: 건, 천원, 명)

합 계			변상 (인원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경고·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사례 (인원)
총 건수	신분상 조치 인원	재정상 조치 금액			소계	회수·추급	기타						
17	46	137,988	-	-	5	3 (137,988)	2	12 (46)	-	-	-	-	-

※ 신분상 조치인원 46명 중 일부 중복 처분으로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35명임

3. 분야별 지적사항

가. 고용센터 분야(지역협력, 고용관리 분야 포함)

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등 부정수급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**사업주 지원금**(4개소, 80,476천원), **근로자 지원금**(18명, 13,500천원) **부정수급**

○ **(조치사항)** 부정수급금 **97,576천원 '회수'** 조치

②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한 후 채용일을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 부정수급(2건, 39,600천원)

○ **(조치사항)**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을 포함하여 **40,400천원 '회수 등' 조치**

③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사업수행기관이 취업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훈련생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등 출결관리 부적정

○ **(조치사항)** 출결부정에 따른 **교통비 등 실비 12,000원**에 대하여 **'회수 등'** 조치하고,

-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는 관련 **지방자치단체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**에 **'통보'**

4 전자팩스민원 접수 지연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 전자팩스**로 **수신**된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**접수 지연**(34건)

○ **(조치사항) 지연 접수**한 ○○○ 등 3명 **'주의'** 조치

5 국고금 관리업무 부적정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기관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**실업급여 반환금 등 14,881천원(97건)을** 31~125일 지연하여 국고 수납

○ **(조치사항)** 국고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○○○ **등 2명** **'주의'** 조치

6 복무관리 부적정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당직명령자의 승인 없이 **당직**을 **임의 대체**하거나(35명), **유연근무**를 하면서 **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미등록**(9명)

○ **(조치사항) 직무교육**을 실시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

나. 감독 분야

1 신고사건 처리 부적정(경고, 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고소·고발·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, 그 외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나 31~139일간 **방치**(166건)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 소홀

○ **(조치사항)** 신고사건 업무를 소홀히 한 ○○○ 등 9명 **'경고'**, ○○○ 등 17명 **'주의'** 조치

② 지명통보(수배)자 소재발견처리 업무 부적정(①과 병합하여 경고)

○ **(위반내용)**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공소시효 만료 시 즉시 지명통보(수배)를 해제하지 않고 **30~183일이 경과하도록 미조치**(22건)

○ **(조치사항) 3건 이상 소홀히 처리**한 ○○○은 '신고사건처리 처리 부적정'과 병합하여 **'경고'** 조치

③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사업장 감독 후 결과보고(시정지시 수보) 지연 또는 시정결과 수보 후 확인감독 보고 지연(18건), 최근 3년간 동일한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범죄인지 누락(5건)

○ **(조치사항)** 사업장 감독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등 2명 **'주의'** 조치

- 3년 이내 동일 사항 위반에 대해 범죄인지 등을 하지 않는 ○○○ 등 4명 **'주의'** 조치

④ 인·허가 등 승인업무 처리소홀(①과 병합하여 경고)

○ **(위반내용) 인·허가·승인** 업무를 **37~72일까지 지연 처리**(10건)

○ **(조치사항) 3건 이상 지연처리**한 ○○○은 '신고사건처리 처리 부적정'과 병합하여 **'경고'** 조치

5 도산등 사실인정 업무처리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도산등 사실인정 **요건충족 심의를 위한** 도산등 사실인정 **심의위원회 미개최**(27건)

○ **(조치사항)** 도산등 사실인정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등 3명 **'주의'** 조치

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사업장 조치 소홀(1과 병합하여 경고)

○ **(위반내용)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**에 대한 조치요청 공문을 접수 후 시정지시(과태료부과) 등 **사후조치 소홀**(78건)

○ **(조치사항)** 3회 이상 조치를 소홀히 한 ○○○ 등 2명 '신고사건 처리 처리 부적정'과 병합하여 **'경고'** 조치

7 위임전결규정 미준수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**1인 결재 후 종결**하는 등 **위임전결규정 위반**(66건)

○ **(조치사항)** 담당자 임의로 전결 처리한 ○○○ **'주의'** 조치

라. 산재예방 분야

1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장 조치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감독 결과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**시정기간을 지키지 않은* 사업주**에 대하여 **범죄인지 등 미조치**(11건)

* 23~98일을 지연하여 시정결과 보고

○ **(조치사항)** 3건 이상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○○○ 등 3명 **'주의'** 조치

2 작업중지명령 해제업무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작업중지명령 후 **10일 이내 해제요청이 없는 경우** 및 **해제요청서 접수 시 현장 확인 미실시**(13건)

○ **(조치사항)** 현장 확인을 3건 이상 하지 않은 ○○○ **'주의'** 조치

3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**부과 기준을 잘못 적용**하여 **과태료 과소 부과**(8건, 3,220천원)

○ **(조치사항)** 부과기준을 3건 이상 잘못 적용한 ○○○ **'주의' 조치**

4 석면해체·제거업자 허위 등록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위생설비 등 **등록기준 장비**를 갖추지 않고 **등록신청 시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빌려** 석면해체·제거업 **등록 신청**

○ **(조치사항) 부정한 방법**으로 석면해체·제거업 **등록증을 받은 ㈜□□□□□□□ 등록 취소 조치**